

영등포구의회
제16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5. 11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2호로 2011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25이상에서 1,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(안 제 27조제5항)

- 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따라 “아파트형 공장”을 “지식산업센터”로 변경(안 제26조제3호, 제29조제6항, 제30조제1항제3호, 제36조제1항제4호, 제37조제2호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사용료·대부료·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(안 제33조제2항, 제33조제3항, 제91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□ 관계법령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3, 제14조, 제32조
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6조, 제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7조의2에 “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.” 는 조항을 신설한 바 이는 2010. 8. 4일 일부개정된 상위법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1항에서 이자율 4%~6%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.
- 안 제26조제3호, 제29조제6항, 제30조제1항제3호, 제36조제1항제4호, 제37조제2호에서 “아파트형 공장”의 명칭을 “지식산업센터”,로 변경한 바 이는 2010. 4. 12일 일부개정 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 한 것에 따른 것임.
- 안 제27제3항제4호, 제27조제4항제7호,제8호, 제27조제5항을 신설 한바 이는 2011. 1. 13일 일부개정 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6조제4항제4호, 제26조제5항제10호,제11호,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각각 변경한 것으로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

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5이상에서 1,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한 것임.

- 안 제30제3항과 제30조제4항을 신설한 바 이는 2009. 5. 28일 및 2010. 4. 11일 일부개정 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0조제3항, 제30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감면율을 80%로 하고, 생산·연구시설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임.
- 안 제33조제2항과 제33조제3항 제91조제1항을 개정한 바 이는 2010. 8. 4일 일부개정 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%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임.
-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1조의3(교환차금의 납부)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료)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**1,000분의 20** 이상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**1,000분의 15**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**1,000분의 10** 이상으로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**1,000분의 25** 이상으로 한다.

4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
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**1,000분의 10** 이상으로 한다.

10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

1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(문화예술 기관·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

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)로 운영하는 경우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③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, 대부료의 감면율은 **80퍼센트**로 한다.

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**100분의 30범위내**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"지식산업센터"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4

용어의 정의

- **공유재산 [公有財産]** :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
 -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(採納) 또는 법령·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,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·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,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(公用財産) · 공공용(公共用) 재산 · 기업용재산 ·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조).

- **행정재산 [行政財産]**
 - **공용재산**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 ·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 - **공공용 재산**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 - **기업용 재산**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
- 보존용 재산 : 법령·조례·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
-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, 그 사용이나 수익(收益)은 허가할 수 있다.
- 일반재산 [一般財産] :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
- 개정전에는 잡종재산이라 하였다. 일반재산은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개발할 수 있으며,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.